

의안번호	2209727
의 퇴 인	전진숙 의원
회 답 일	2025. 6. 19.
추계번호	25C2213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안 제19조의3(노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	(제1항)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4조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수급자에게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의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가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 장기요양 급여를 제공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최대 120개월 까지 추가로 산입 (제2항)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
2	안 제19조의4(장애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	(제1항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(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는 그 기간을 가입기간에 최대 120개월 까지 추가로 산입 1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수급자와 함께 거주하며 간호·간병,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: 간호·간병등을 제공한 기간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당을 지급받는 자: 보호수당을 지급받은 기간 (제2항) 제1항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9조의3(노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9조의4(장애인돌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)	

2. 상세 사유

- 노인돌봄 및 장애돌봄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 신설되는 경우, 관련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 - 개정안에 따른 노인돌봄 및 장애돌봄 제공자가 관련 크레딧 지원을 받는 경우,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그에 상응하는 연금 수령액이 증가함
-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관련 크레딧 수급자의 수 및 증액될 수령액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함
 - (안 제19조의3) 현 시점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가족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수와 그들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가 어려움
 - (안 제19조의4) 현 시점에서는 장애아동수당 수급자의 간호·간병 제공 가족 및 보호수당 수급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의 수와 그들의 기준소득월액에 관한 정보가 부재하여 추계가 어려움
-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